

2025년 제2회 공무원 근로자(조리원)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

2025년도 제2회 전주교도소 공무원 근로자(조리원)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
채용후보자 등록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2월 27일
전주교도소장

1. 최종합격자 명단(1명)

채용분야	응시번호	성명
공무원(조리원)	2025-002	조○○

2.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

가. 최종합격자(채용후보자) 등록

- 등록일시 : 2025. 2. 28.(금) ~ 3. 5.(수), 3일간(공휴일 제외)
- 등록장소 : 전주교도소 총무과(전북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)로 방문접수

나. 제출서류

- ① 신원진술서 1부【붙임 1】 - 단면인쇄
- ②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각 1부【붙임 2】
- ③ 서약서【붙임 3】 1부 및 공정채용 확인서【붙임 4】 1부
- ④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【붙임 5】 1부
- ⑤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
 - 본인 명의로 발급,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 번호까지 모두 기재된 것

⑥ 기본증명서(상세본) 1통

- 본인 명의로 발급,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 번호까지 모두 기재된 것

⑦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통

⑧ 최종학교 졸업(재학·휴학·제적)증명서 1통

⑨ 본인 명의 급여이체 통장 사본 1부

⑩ 사진(3cm×4cm) 3매

다. 제출방법

- ① 최종합격자(채용후보자) 등록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 및 제출서류를 준비하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.
- ② 지정된 기간 내에 반드시 채용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,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·임용 포기서를 작성하여 우편송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【붙임 6】

라. 유의사항

- ①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, 결격사유 여부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②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등*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예비합격자 순번에 의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합니다.

* 사유 :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, 최종합격자의 채용계약 체결 후 계약포기, 선발취소, 사전 예고 없는 퇴직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

- ③ 채용후보자 등록용 제출서류는 채용합격자 발표일 이후에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④ 기타 문의사항을 전주교도소 총무과 (063-224-4361, 내선 204번)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신원진술서 양식 1부
2.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
3. 서약서 1부.
4. 공정채용 확인서 1부.
5.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.
6. 등록·임용포기서 1부. 끝.

【붙임 1】

[별지 제21호서식] <개정 2020.3.17.>

신 원 진 술 서(약식)

(앞쪽)

성 명		한 자		주민등록번호		【 사 진 】 사진파일 가능 (3cm×4cm) · (3.5cm×4.5cm)	
등록기준지							
주 소							
실거주지							
직 장	직장명 : 소재지 :			연 락 처	직장전화 : 휴 대 폰 : E-mail :		
학 력	학 교 명	기 간		전 공 학 과		학 위	소 재 지
		. . ~ . .					
		. . ~ . .					
		. . ~ . .					
경 력	기관·업체 및 정당·사회단체명	기 간		직 책(직급)		상 별 관 계(일자)	
		. . ~ . .					
		. . ~ . .					
		. . ~ . .					
해외 거주 사실	거주 국가	기 간		거주 목적		동반 가족	
		. . ~ . .					
		. . ~ . .					
병역	군 별	기 간		병 과	최종 계급	미 필 사 유	
		. . ~ . .					
배우자 부모 자녀	관 계	성 명	생년월일	관 계	성 명	생년월일	
	배우자			子女			
	父			子女			
	母			子女			
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,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관계 법령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.							
작 성 자 성명				년 월 일 인(서명 또는 날인)			

210mm×297mm [백상지(80/㎡) 또는 중질지(80/㎡)]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국가정보원, 국방부 및 경찰청은 「보안업무규정」 제46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, 제23조(민감정보의 처리 제한), 제2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) 및 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,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·이용합니다.

■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항목	성명(한자 포함), 사진, 주민등록번호, 등록기준지, 주소, 실거주지, 직장(직장명, 소재지 포함), 연락처(직장전화, 휴대폰, E-mail 포함), 학력(학교명 등 포함), 경력(기관 또는 업체명 등 포함), 해외거주사실(거주목적, 동반가족 등 포함), 병역사항, 가족관계(배우자, 부모, 자녀 포함)
수집·이용 목적	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
보유·이용 기간	2년

※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**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**가 있습니다. 그러나 **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「보안업무규정」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(채용)·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**을 알려 드립니다.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 [] 동의하지 않음 []

■ 민감정보 처리 안내

항목	정당·사회단체 경력
수집·이용 목적	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
보유·이용 기간	2년

※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**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**가 있습니다. 그러나 **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「보안업무규정」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(채용)·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**을 알려 드립니다.

☞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 [] 동의하지 않음 []

■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

항목	주민등록번호
수집·이용 목적	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
보유·이용 기간	2년

※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「보안업무규정」 제46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[]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,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.

2025 년 월 일

신청인(대리인): (서명 또는 인)

(필요시) 법정대리인: (서명 또는 인) 연락처:

<유의사항>

- ① 신원조사를 위한 신원진술서 작성 및 제출은 보안업무처리규정에 의해 임용되기 전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② 신원진술서는 1부를 작성합니다.
- ③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,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단, “서명 또는 날인”은 모두 반드시 자필로 하시기 바랍니다.
- ④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. 해당사항이 없는 곳은 “해당사항 없음”이라고 기재합니다

【 작성방법 】

☐ 성명, ☐ 주민등록번호

-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.
- 신원조사는 제출된 가족관계등록서류를 참고로 관련 기관에서 조회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조회하기 때문에 주민등록표상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와 모두 일치하여야 합니다.
- 개명 등으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,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이 다른 경우에는 작성 당시 주민등록표상의 성명·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

☐ 직장명: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만 기재합니다.

☐ 학력 : 본인의 고등학교 학력부터 최종학력까지 기재합니다.

- 학 교 명 : 본인이 졸업한 학교명이 현재 폐교, 학교명의 변경 등의 사유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졸업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- 기 간 : 입학년월일, 졸업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학년월·졸업년월만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- 전공학과 : 대학의 전공학과를 기재합니다.
- 학 위 : 재학 중인 경우는 기재하지 않습니다.

☐ 연락처 :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, e-mail을 기재합니다.

☐ 경력 : 임용시 제출된 직장 경력 기재합니다.

☐ 정당, 사회단체 활동

- 본인이 가입한 정당이나 사회·시민단체에 관하여 기재합니다.
- 해당사항이 없으면 ‘해당 없음’ 이라고 기재합니다.

☐ 부모, 배우자, 자녀, 형제, 자매 : 친부모·배우자·본인의 자녀·형제·자매를 기재합니다.

- 기재 순서는 부모, 배우자, 자녀, 형제자매 순으로 기재합니다.
- 부모, 배우자,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모두 기재

【붙임 2】

개인정보 제공 동의서(약식)

-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(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. 이하 동일)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, 이를 위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 및 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.
- 이에 따라,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.
-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.

유의사항 (개인정보 수집 목적·관리방법,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)	
■ 수집된 개인정보자료·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, 「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」에 따라 관리·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.	
■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	

년 월 일

성명 (서명)

■ 본인 동의

성명	생년월일	서명	
		개인정보 제공 동의	민감정보 제공 동의
		자필 서명	자필 서명

※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

개인정보	민감정보
■ 주민 조회자료(경찰청)	■ 범죄경력·수사·수배 조회자료(경찰청)

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1. 이용기관 명칭 : 행정안전부, 경찰청, 지방경찰청, 경찰서
2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범죄경력 조회, 결격사유 조회, 공무원시험 부정행위자 조회
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연 번	행정정보명	연 번	행정정보명
1	범죄경력 유무 조회		
2	결격사유 유무 조회		
3	공무원시험 부정행위자 조회		

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(필요시 기재사항)

(☒ 주민등록 ☐ 여권 ☐ 외국인등록 ☐ 운전면허) 번호 : _____ - _____

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‘행정

-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
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
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025년 월 일

대상자 본인

성명 :

(서명 또는 인)

생년월일 :

전화번호 :

서 약 서

본인은 「법무부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지침」 8조(채용 결격사유)에 따라 아래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음을 서약하며, 결격사유 발견 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(국가공무원법 33조 결격사유)

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**다른 법률**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※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 제6호 '다른 법률' 에 해당하는 법률

- 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7조
- 「공직선거법」 제266조 제1항
- 「병역법」 제76조 제1항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제2항
- 「정치자금법」 제57조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년 월 일

성 명 : (서명)

전주교도소장

공정채용 확인서

(응시자용)

작성자 인적사항

생년월일 : . . .

성명 :

※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

확 인 사 항	해당여부	
	예	아니오
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법무부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?	☐	☐
본인의 친인척이 법무부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?	☐	☐
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?	☐	☐
친인척 관계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,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 ()촌 이내 / 소속기관 : 근무부서 : 이름 :		

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.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·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서명

(인)

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고지

- ① 수집·이용목적 : 채용경로 조사 및 「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」 이행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, 감사자료 작성
- ② 수집·이용항목 : 성명, 소속, 직종, 소속기관 입사일자, 법무부 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직원 소속, 성명
- ③ 보유기간 : 재직기간 동안 보유

전주교도소장 귀하

【붙임 5】

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상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채용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1.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----- ☒ 있음 ☐ 없음 ☐

※ 공직자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

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

2. ‘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’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

※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

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
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
※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 → 부패행위 비해당

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 → 부패행위 해당

3-1.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

3-2. 현재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내)

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)

4-1.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

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내)

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)

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 해당 여부 ----- ☒ 해당 ☐ 비해당 ☐

1, 2, 4-1, 4-2 (모두 충족)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 해당 여부 ----- ☒ 해당 ☐ 비해당 ☐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.

년 월 일

지 원 자

(서명)

등록.임용 포기서

(□ ㄴㅇㅇ / □ ㅇㅇㅇ)

- 시험 구분 : 2025년 제1회 전주교도소 공무원직 근로자(조리원) 채용시험
 ▪ 응시 번호 :
 ▪ 성 명 : ▪ 주민등록번호 : -
 ▪ 주 소 :
 (우편번호 -)
 ▪ 전 화 번 호 : 일반전화 - - , 휴대전화 - -

위 본인은 ()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관리인으로 채용될
의사가 없으므로 ☐ 등록 / ☐ 임용을 포기하고자 합니다.

일자 : 2025년 04월 01일

성명 : (서명/인)

전주교도소장 귀하

- ※ 팔호안 **포기사유** 예시 : 타시험 합격, 현직장업무 계속, 사업, 질병, 가사형편 등
- ※ 성명 옆에는 반드시 **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**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맨 아랫줄은 수신기관 표시
- ※ 주소·전화번호는 주민등록상의 주소 또는 응시원서상의 것과 달라도 되며, 현재 우편물을 받거나 연락받을 수 있는 곳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